

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112

제출년월일 : 1992. 10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 안 이 유

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('92. 10. 1 대통령령 제13,734호)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준칙이 시달되었으므로 속초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를 별첨과 같이 개정코자 제안합니다.

- 1)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상향조정 : 10 %
- 2) 전임전문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상향조정 : 15 %
- 3)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의 방범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지급하던것을 각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
- 4)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규정 신설

2. 주 요 골 자

-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: 별표 1
- 전임전문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: 별표 2
-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구분표 : 별표 3

3. 개정경위 및 근거

□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(대통령령 제13,734호 : '92. 10. 1)

○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. (별표 9) 특수업무수당지급 구분표 제20호 방범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

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지 급 액
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
- 지급방법
수당의 지급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
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(안)

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속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(이하"영"이라한다)에서 지방공무원(이하"공무원"이라 한다)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의료업무등의수당)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: 【 별표 1 】 의 지급구분표
2.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: 【 별표 2 】 의 지급구분표

제 3 조(방법수당) ① 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인 방법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수당의 지급액은 월 40,000원으로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법 경력연수에 따라 【 별표3 】 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.

【 별표 1 】

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전 문 의	일 반 의	비 고
월 609,000원이하	월 518,000원이하	

※ 비 고 :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,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로 한다.

【 별표 2 】

전임전문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등급별 근무년수별	가 급	나 급
5 년 이 상	월 1,012,000원이하	월 673,000원이하
4 년 이 상	월 1,006,000원이하	월 667,000원이하
3 년 이 상	월 1,000,000원이하	월 661,000원이하
2 년 이 상	월 995,000원이하	월 656,000원이하
2 년 미 만	월 989,000원이하	월 650,000원이하

※ 비 고 : 1.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.

2. 등급(가, 나)구분 :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3조 【 별표 】

방법수당 가산금 지급구분표

자 율 방 법 원 경 력		가 산 지 급 액	비 고
1년이상	2년미만	월 8,000원	
2년이상	3년미만	월 16,000원	
3년이상	4년미만	월 24,000원	
4년이상	5년미만	월 32,000원	
5년이상	6년미만	월 38,000원	
6년이상	7년미만	월 44,000원	
7년이상	8년미만	월 50,000원	
8년이상	9년미만	월 56,000원	
9년이상	10년미만	월 62,000원	
10년이상	11년미만	월 66,000원	
11년이상	12년미만	월 70,000원	
12년이상	13년미만	월 74,000원	
13년이상	14년미만	월 78,000원	
14년이상	15년미만	월 82,000원	
15년이상	16년미만	월 84,000원	
16년이상	17년미만	월 86,000원	
17년이상	18년미만	월 88,000원	
18년이상	19년미만	월 90,000원	
19년이상	20년미만	월 92,000원	
20년이상	21년미만	월 94,000원	
21년이상	22년미만	월 96,000원	
22년이상	23년미만	월 97,000원	
23년이상	24년미만	월 98,000원	
24년이상	25년미만	월 99,000원	
25년이상		월 100,000원	

신,구조문대비표

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(월 지급액)

전 문 의		일 반 의		비 고
종 전	개 정	종 전	개 정	
554,000원	609,000원이하	471,000원	518,000원이하	

※ 비 고 :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,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로 한다.

전임전문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(월 지급액)

구 분	가 급		나 급	
	종 전	개 정	종 전	개 정
5 년 이 상	880,000원	1,012,000원이하	585,000원	673,000원이하
4 년 이 상	875,000원	1,006,000원이하	580,000원	667,000원이하
3 년 이 상	870,000원	1,000,000원이하	575,000원	661,000원이하
2 년 이 상	865,000원	995,000원이하	570,000원	656,000원이하
2 년 미 만	860,000원	989,000원이하	565,000원	650,000원이하

※ 비 고 : 1.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.

2. 등급(가, 나)구분 :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3조 【 별표 】

방법수당 가산금 지급구분표

(월 지급액)

자 율 방 법 원 경 력		가 산 지 급 액		비 고
		종 전	개 정	
1년이상	2년미만	-	8,000원	
2년이상	3년미만	-	16,000원	
3년이상	4년미만	-	24,000원	
4년이상	5년미만	-	32,000원	
5년이상	6년미만	-	38,000원	
6년이상	7년미만	-	44,000원	
7년이상	8년미만	-	50,000원	
8년이상	9년미만	-	56,000원	
9년이상	10년미만	-	62,000원	
10년이상	11년미만	-	66,000원	
11년이상	12년미만	-	70,000원	
12년이상	13년미만	-	74,000원	
13년이상	14년미만	-	78,000원	
14년이상	15년미만	-	82,000원	
15년이상	16년미만	-	84,000원	
16년이상	17년미만	-	86,000원	
17년이상	18년미만	-	88,000원	
18년이상	19년미만	-	90,000원	
19년이상	20년미만	-	92,000원	
20년이상	21년미만	-	94,000원	
21년이상	22년미만	-	96,000원	
22년이상	23년미만	-	97,000원	
23년이상	24년미만	-	98,000원	
24년이상	25년미만	-	99,000원	
25년이상		-	100,000원	